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분석 - 제5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박창언 · 주동범[†]
(부산대학교 · [†] 부경대학교)

The Analysis of the Change Process of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Curriculum: Focusing on the 5th-7th Revised National Curriculum

Chang-Un PARK · Dong-Beom JU[†]
(Pusan National University ·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change process of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curriculum related with the 5th-7th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o accomplish this goal, the nature and goals of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were reviewed. First, it was found that the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high school for special goal, characterization, and industry. And the goal of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was designated to harmonize the general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in high school goal. Second, the legal basis and system of national curriculum in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were discussed. The legal basis of national curriculum in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was prescribed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system of national curriculum was composed the general guideline and subjects. Third, the change process of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national curriculum was discussed. The system of decision, general guideline, and subjects in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national curriculum were seemingly to be studied on the basis of the autonomy or diversity. In conclusion, the concrete content of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national curriculum was not changed compared to the 5th-7th revised curriculum.

Key words :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national curriculum, General guideline of national curriculum, Subjects of national curriculum

I. 서론

광복이후 국가 교육과정은 시대·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

으면서 주기적으로 개정되었다. 과거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작업은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정보화 사회라는 문명사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반적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511, j2009@pknu.ac.kr

인 교육개혁이 진행되었고, 교육과정 역시 획기적으로 개정되었다.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과 맞물려 광복 이후 수산분야의 증진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여,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던 수산계열은 정보화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구조의 재편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이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삶과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어 만들어 가는 사회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산업사회에서의 학문적인 이론 교육과 직업 교육의 구분에 대한 변화를 요청하고, 학교 밖의 사회교육기관이 정규 교육기관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능력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제공되어야 하며,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내용을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기초가 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이며, 제7차 교육과정은 본격적인 개정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 제5차 교육과정과 달리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교육과학기술부, 2008: 90)를 개정 중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정 중점은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개발에서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자율·재량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직까지 분권화된 결정과 자율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이 인간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고, 수산계열 고등학교가 과거와 다른 사회 체제에 적용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도전을 불가피하게 된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 결정과 구조의 변화가 이념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산계열 교육과정

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산계열에 대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수산계열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차시별로 모든 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지면 등의 제한이 따르게 된다.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결정방식이 주되게 변화된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되, 필요에 따라 제4차 혹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 교육과정 결정 구조에 대한 주된 변화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주된 사항에 대한 변화 양상을 확인·검토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산계열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산계열 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는 기초적 논의 과제를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고 수산계열 교육과정 논의는 전문교과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고등학교에 한정해 이루어지는 제한이 있다.

II. 수산계열 고등학교의 성격과 목적

1. 수산계열 고등학교의 성격

1949년 ‘교육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법령에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1994년 3월 23일 대통령령 제14195호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의 2(고등학교 입학방법)의 제4항이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로서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등도 동시에 규정하였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제외한 실업계 고등학교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수산계열 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입법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관련하여 규정된 사항이었다.

1997년에 들어서서 기존의 ‘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분화되고, ‘초·중등교육법’의 하위 법으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1998년 3월1일 시행)되었다. 특수목적에 대한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절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규정을 두면서,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가 추가되었다. 기존 ‘교육법시행령’에서 고등학교 입학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독립된 조문으로 규정된 것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1조에서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실업계 고등학교의 형태도 존재하고 있다. 수산계열 고등학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실업계고(종합고) 등의 운영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1997년에 들어서서 ‘교육법’이 분화되면서 이들 내용이 독립된 조문으로 구체화된 것은 1995년도부터 단행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의 교육개혁방안 초기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직업교육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로 학생의 직업교육 선택 폭을 확대

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기존의 실업계 고교를 특정 분야의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고교를 설립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15-19).

그 뒤 이 조문은 현재까지 지속하면서 수산계열 고등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수산계열 고등학교는 단순히 실업계 고등학교(종합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으로도 분류된다.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선원양성을 위한 해양계열 고등학교와도 구분이 되는 학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산계열 고등학교는 해양계열 고등학교와 구분되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및 평가를 요하는 것이다.

2. 고등학교 교육목적과 수산계열 교육과정

현재 고등학교 교육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과거 교육법이 단일 법전으로 되어 있던 시기에는 고등학교 교육목적뿐만 아니라 교육목표도 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들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1949년 규정된 이래 변화가 없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교육법이 분화되면서 ‘교육목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규정되고, 교육 관계법에서는 삭제되었다. 교육목적에 대한 사항부터 살펴보면 수산계열 고등학교가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서는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교육법’에서는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현행법과 구 ‘교육법’의 규정을 비교하면,

‘고등보통교육’이 ‘중등교육’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교육’이 ‘기초적인 전문교육’으로 자구의 수정이 있을 뿐이다.

법조문을 보면,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라는 말은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계속되는 학교이므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것이며, 고등학교의 입학 자격이 중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정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중등교육’과 ‘기초적인 전문교육’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가리키는 ‘고등교육’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등교육’은 고등교육 이전의 단계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중학교의 교육목적은 기술한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서도 중등교육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동법 제41조는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볼 때, 고등학교에서의 ‘중등교육’은 이 용어만이 아니라 앞의 어구와 함께 고려해야 의미가 보다 명확해 진다.

앞의 어구에서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중등교육에 해당되지만,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에서 사용되는 중등교육은 중학교 이후 단계에 해당되는 후기 중등교육의 의미로 사용된다.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기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제시된 ‘기초적인 전문교육’과 대비시켜 볼 때, 직업교육과 대비되는 일반교양교육을 말하는 보통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통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누리어 나감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 되는 기초적인 지식·기능을 습득시켜 주는 일반교육”(김낙운, 1986: 439)을 말한다. 이에 따라 바로 이어 제시되는 ‘기초적인 전문교육’은 일반교육과 대비되는 직업교육을 말하는 것이 된다.

직업교육은 일반교육과 대비하여 말하거나 특

별한 전문직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본조의 전문교육은 직업교육과 직결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의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과거에 전문적 지식·기술이 오늘날에는 일반적 지식·기술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문교육’이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기초적인 전문교육’이라고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조항은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수산계열 고등학교 역시 고등학교 교육목적으로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과정도 이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산계열 고등학교는 전문교육을 위주로 하는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에 해당되는 사항이 교육과정에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Ⅲ. 수산계열 교육과정의 근거와 문서체제

1. 수산계열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할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유형과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다. 1998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교육법’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목적과 관련된 규정과 달리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에 대한 규정은 과거와 차이가 있다. 구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서는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규정에 의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할 때, 국가수준에서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지역수준에서는 지역수준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은 국가에 한정되지만,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은 지역수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박창언, 2003: 95-96).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국가와 지역, 학교수준의 역할 분담 체제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과거의 ‘교육법’에서는 교육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함으로써 법에서 말하는 ‘교육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였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가수준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 지역수준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역할 분담체제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일임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발의나 개정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 등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백지 위임되어 있다.

셋째,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견제 기구에 대한 사항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을 대부분 행사하게 되어 있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교육과정심의회’라는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과정 결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될 소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의해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설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학교 실정이나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산계열 고등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의 한 교과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특징적인 면 또한 공유하고 있다. 즉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역 및 학교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산계열 고등학교 국가 교육과정은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이나 학교의 실정에 적합하게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산계열 고등학교의 국가 교육과정 결정에서 교육과정심의회는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이 기구 외에 법적인 견제 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국가 교육과정에서 수산계열의 위치

현행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총론과 각론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은 여럿으로 나

누어져 있는 교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각 교과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각 교과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으로 존재한다(윤병희·조영태·신범석·곽상만·허경철, 1991: 16-17). 각론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교과에서 가르칠 구체적 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2007년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총론과 각론에 앞서 교육과정 고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정 고시문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점과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을 밝히고, 이어 이 교육과정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iii).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성격을 분명히 제시한 것은 1992년 10월 30일자로 고시된 교육과정(제6차 교육과정)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단위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이며, 일반적 기준’,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기준 이외에 더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호에 의거 각 시·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정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1992: 1).

제6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고시문은 있지만, 교육과정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명백히 하지 않았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명문화하였다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지역화의 강조와 더불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의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그 이후의 교육과정 개발과 주된 차이가 나는 점이다.

제7차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학교급별 교육목표, 편제와 시

간(단위)배당 기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침으로 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구성방향은 교육과정의 개정 의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수산계열 고등학교에서 추구하여야 할 방향을 담고 있다. 편제와 시간배당은 수산계열이 교육활동의 영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으며, 다른 교과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가를 담고 있다.

각론은 일반적으로 해당 교과별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교과는 이러한 일반 교과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목표, 내용, 유의점의 3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각론은 수산계열 교과서를 만드는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사용 지도서 역시 교과서와 관련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성방향과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편제와 시간배당은 일반계 학교와 동일하게 제시되지만, 직업과 관련된 수산계열 전문교과로 편성하고, 수산계열 직업관련 교과에 시간배당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이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각론의 경우는 일반계와 비교해 영역 수가 적게 드러나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형상 일반계에 비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구축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교육과정의 법적근거와 교육과정 문서체제에 따라 수산계열 고등학교 체제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근거의 변화와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체제가 정확히 일치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는 법률의 수권에 의해 ‘고시’되기 때문에 법률을 보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규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는 제6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되는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합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교과서 중심의 학교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전환시켜, 단위학교에서 실현된 교육을 최대한 접근 시키고자 하는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교육부, 1999: 7; 이경환·류연수·박재운·노희방, 1999). 수산계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분석도 이러한 교육과정 개혁의 전환점으로서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되, 필요에 따라 이들 개정 시기의 전후 교육과정 개정 내용도 추가적으로 동원된다.

IV. 수산계열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분석

1. 수산계열 교육과정 결정 방식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일반계나 기타 계 고등학교와 동일한 시기에 개정을 하고 있으며, 하나의 문서에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교육과정 결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일반론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살펴 보면서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과정 결정이 중앙집권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국가와 지역, 그리고 학교수준의 역할 분담 체제가 마련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의 결정에서도 교육과정의 결정 방식의 부분적 변화가 있었다. 과도기와 교수요목기를 거쳐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문교부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기초 연구와 총론, 각론, 시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형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의 개정 방식의 변화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형 성격으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교육과정 결정의 주도권은 여전히 국가가 지니고 있었다.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 업무는 1985년 6월 19일에 문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각급학교 교육과정 시안을 위촉하는 것으로 비롯된다(함종규, 2004: 553).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과정의 총론 시안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이어 각론 시안을 개발하여 문교부에 답신 보고하였다. 문교부는 개정 시안을 접수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에 들어가 고등학교는 최종적으로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88-7호로 공포함으로써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완료되게 된다(유봉호, 1992: 409). 교육과정의 고시와 더불어 교과서 개발과 교원 연수가 시작되었다. 고등학교는 1990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의 결정 과정을 볼 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개발을 하였다고 하지만, 주도권은 교육부가 가짐으로써 국가주도적인 교육과정 결정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의 체제의 개발에서도 총론이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난 후, 각론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각론이 최종적으로 개발되고 난 후, 교과서 개발과 교원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앙집권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난 후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안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6차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단위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공통적·일반적 기준임을 명시하고,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 분담 체제를 마련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1990년 3월에서 9월 사이에 장학관수실의 교육과정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함종규, 2004: 602). 이어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연구를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에 위탁하여 시안을 개발하게 된다. 연구위원회의 총론 시안 보고에 따라 이를 토대로 시안에 대한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론은 1991년 12월에 확정되게 된다. 교육과정 각론은 확정된 총론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각론의 개정 시안은 1992년 4월에 교육부에 접수되고, 이에 대한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회가 개최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2년 10월 30일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확정되었다(교육부, 1995: 114-115).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지역, 학교수준의 역할분담 체제를 마련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기존의 성격을 지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기본 개정 절차는 변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97년에 이루어진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결정 구조는 유사하다. 1996년 3월에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위원회에 기초 연구를 위탁하게 된다.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시안이 개발되고 난후, 이에 대한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회가 개최되어 수정·보완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총론 개정안은 1997년 2월 28일에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각론의 연구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탁하여 구체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각론의 시안이 확정되고 난 후, 시안에 대한 심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통해 1997년 12월 30일에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확정·고시된다(교육부, 1999: 80-81). 교육과정이 확정·고시되면 이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교육과정 결정의 중앙집중성을 극복하고 분권화의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제6차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정 결정 방식도 제5차 교육과정의 이전까지의 방식과 마찬가지로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과정은 총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난 후, 각론의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수준에서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기본 구조나 체제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수산계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총론에서 정한 교과 편제나 시간 배당 기준 및 편성·운영지침에 구속되고 있다.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산계열 교육과정이 제5차 교육과정과 달리 국가수준의 기준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문서를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다.

2. 편제와 시간배당의 변화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고등학교 교육목표, 편제와 단위배당, 교육과정 운영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구성방침, 편제, 단위배당 기준, 편성·운영의 기본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고등학교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단위)배당 기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침으로 되어 있다.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을 볼 때, 교육과정의 성격이 명시된 점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교육목표가 추가되어 있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육과정의 구성방향이나 교육목표와 관련된 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이다. 그 이전에 해당되는 광복이후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1954년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사항이 없고, 교수요목(教授要目)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윤병희·조영태·신범석·곽상만·허경철, 1991: 20). 이들 사항은 교육과정의 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추상적 수준에서 제시되는 관계로 수산계열 교육과정과 직접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작업이 필요하다.

교과편제와 시간배당은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

육과정 운영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비록 현재는 법률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각 교과교수요지, 요목급 수업시간 수’로 명시하고 있었다.¹⁾ 따라서 이들 용어는 교육과정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수산계열 교육과정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편제와 시간배당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첫째, 교과 편제에 대한 사항을 보기로 한다. 교과 편제는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 모두 교과와 특별활동의 2대 영역으로 구성하고, 교과는 다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고 있다. 수산계열 교육과정은 이들 중 전문교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두 구분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하였지만, 여전히 교과 내에서 전문교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산계열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을 위주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수산계열 직업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보다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수산계열 고등학교의 시간배당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교과는 3년간 82-122단위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필수교과는 38-74단위를 이수하고, 전문선택과목은 44-84단위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전문교과의 이수단위는 82-122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4차 교육과정부터 수산과 해운 계열의 목표가 통합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이에 대한 시간배당도 수산-해운 계열로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부터 필수교과로서 수산일

반, 수산실습, 전자계산일반의 3가지가 필수 교과로 정해져 있다.²⁾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는 8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필수교과는 수산일반, 수산정보처리, 해양일반 등으로 되어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배당표는 최소 이수단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분권화를 지향하는 제6차 교육과정 이전이나 이후가 모두 전문교과에서 82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국가수준에서 최소 수준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지역이나 단위학교에서 교과에 대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제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국가수준에서 필수 교과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권한 행사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 경향으로 보인다.

3. 교육목표와 내용의 변화

교육과정 각론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가리키는 말로서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을 결정짓는 핵심적 영역이 된다. 또한 각론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교과의 영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각론에서 논의하여야 할 대상은 각론의 구성요소와 내용의 제시 방식에 관한 것이다. 각론의 구성요소를 보면, 제4차 교육과정부터 수산계열과 해운계열의 교육목표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내용 요소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 이후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수산계열과 해운계열의 교육과정이 함께 제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은 해당 단원별 ‘목표’와 ‘내용’의 2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각론의 내용 체계는 목표, 내용, 유의점의 3대 영역

1) 구 ‘교육법’ 제155조 제1항이 1981년 2월 13일 법률 제3370호로 일부 개정(1981년 3월 1일자 시행)되면서 과거의 “각 교과의 교수요지, 요목급 수업시간 수”를 문교부 ‘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2) 해운일반, 해운 실습 등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산계열로 한정하여 과목을 제시한 것이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는 내용 체계가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상의 유의점이라는 4대 영역으로 확대 구성되어 있다.

이들 내용 체제에 나타난 사항으로 교육목표, 내용에 대한 제시방식, 내용의 제시수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목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목표는 제4차 교육과정기 이후부터 수산계열과 해운계열의 교육목표를 통합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진술에 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두 시기에서 교육목표의 진술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제5차 교육과정의 수산·해운에 관한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수산·해운계열의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술인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길러,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 수산·해운업의 각 분야에서 종사할 기술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수산·해운업의 합리적 운영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운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수산업의 중요성과 국가 산업 경제와의 관계를 인식하여, 수산업의 발전 및 국민의 복지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 해운업의 중요성과 국가 산업 경제와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여, 해운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문교부, 1988: 28-29).

제6차 교육과정의 수산·해운 교과목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수산·해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수산·해운업의 각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길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교육부,

1992: 846).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수산계열 교과목의 목표는 진술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 논조는 동일하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목표를 제시하고, 명세목표를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목표만을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일반목표를 제시하고, 명세목표를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함양, 수산업 발전이나 국가발전에 기여라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교육목표는 교과에 한정된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의 내용은 변함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수산계열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적 수준의 교육목표가 제시됨으로써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관련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내용의 제시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차 교육과정은 각 단원에 해당되는 목표를 간단히 진술하고 내용은 교수요목의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수산계열 역시 일반계 학교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은 큰 변화가 없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일반계의 경우 해당 단원을 진술하고, 이에 대한 목표를 진술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수산계열의 경우는 여전히 교수요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을 진술하는 방식의 변화가 거의 없음으로 인해 기존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셋째,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내용의 진술방식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지만, 구체적인 교육과정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모든 수준의 고찰을 행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에 속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수산일반'에 대한 내용에 한정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할 때, 제5차 교육과정에 비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산업의 관리제도'라는 단원이 추가되고, 그 외의 사항은 대동소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해양과 그 환경'에 해당되는 사항이 제외되고, 그 외의 사항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교육과정의 결정방식의 변화와 시대·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넷째, 각론의 하위 영역이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주로 해당 교과의 '목표'와 '내용'의 2대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이들 영역 외에 '유의점'이 추가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수산일반'에 해당되는 '유의점'을 보면, 이 과목은 저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할 것, 중복되는 영역은 제외하고 지도 가능, 체험학습 강조, 수질

오염과 방지대책의 강조 지도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유의점'에서 평가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평가는 이론의 전 영역에서 실시, 평가 결과의 피드백 자료로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수산계열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유의점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교사 수준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만,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으로 개정이 될수록 '유의점'에 대한 사항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교사의 자율성을 보다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계열 고등학교의 성격과 목적을 확인하였다. 수산계열 고등학교는 일반교양을 추구하기 보다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성격과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실업계고(종합고) 등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와 문서 체

<표 1> '수산일반'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

제 4 차	제 5 차	제 6 차	제 7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의 뜻과 발달과정 · 수산업의 현황과 전망 · 해양과 기상 · 수산자원 · 어업 · 수산양식 · 수산가공 · 수산경영 · 해양환경의 보호 · 선박개요 · 복지어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의 개요 · 해양과 환경 · 수산자원 · 어업 · 양식 · 수산물가공 · 선박과 운항 · 수산경영과 복지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의 개요 · 해양과 그 환경 · 수산자원 · 어업 · 양 수산가공 · 수산경영과 수산물 유통 · 어선과 그 운항 · 수산업의 관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의 개요 · 수산자원 · 어업 · 선박운용 · 수산양식 · 수산가공과 위생 · 수산물 유통 · 수산업의 관리제도

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변천을 논의하는 시기를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교육과정의 결정구조,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정 각론으로 구분하여 개괄적 수준에서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과거에 비해 형식적인 면에서는 분권과 자율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개정이 거듭되고, 사회적 요구를 언급하면서도 이들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수산계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일반계 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기존의 교육과정 평가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주도적인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국가에서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까지 모두 제공해 줌으로써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 여겨진 것이 또 다른 요인으로 보인다. 이들 논의를 토대로 향후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결정 방식의 실질적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는 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결정이 국가, 지역, 학교로 역할 분담되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사와 교사집단으로 구성된 교직원 회의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민주적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여 활성화하도록 한다.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기 이전에 국가수준에서 수시개정 체제가 정비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과정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김삼곤, 2000: 94-95).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시간배당에 대한 최소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목의 편제를 볼 때,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을 동시에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간배당은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 이후에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10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 적용됨으로써 수산계열 고등학교는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009 개정 교육과정(안)에서는 국민공통기본 교육을 9년으로 함으로써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국가수준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의 시간배당이 더 축소되게 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시간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수산계열 교육과정 각론의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시대·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성방향이 변화되었지만, 수산계열 교육과정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 직업교육에 보다 중점이 있는 수산계열의 경우 기초능력의 중시, 직무분석에 기초한 실무능력의 향상,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확대 등으로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김삼곤, 2003: 155). 이는 산업사회와 다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내용에서 이들을 반영하는 구조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육과정 내용의 제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복 이후 현대적 의미의 교육과정이 성립되었지만, 수산계열 교육과정은 교수요목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성취목표의 형태도 제시되고 있다. 교수요목으로 될 경우 교과서 목차를 규제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론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구성방향이 다른 교육과정 내용의 제시방식도 적

절한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김삼곤·주수동·김성재, 1998: 125-126).

다섯째, 수산계열 고등학교는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체제의 다양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산계열 고등학교의 학생은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0.26%, 실업계 전체 학생 수의 0.8%에 불과하다(김삼곤, 2003: 156). 그러나 운영 형태는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실업계고(종합고)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각 학교별 개성이 나타나는 것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학생 수와 학교를 세부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최소화함으로써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다양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1990).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재량활동, 특별활동-,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Ⅱ), 서울: 교육

부.
 교육부(1995).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서울: 교육부.
 교육부(1998). 고등학교 교육과정(Ⅱ), 서울: 교육부.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총론·재량활동-, 서울: 교육부.
 김낙운(1986). 현행 교육법해설, 서울: 하서출판사.
 김삼곤(2003).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12(1), 83~97.
 김삼곤(2003). 수산·해운계고 교육과정의 중점과 발전적 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 15(2), 154~165.
 김삼곤·주수동·김성재(1998). 제7차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구성 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 10(2), 115~128.
 문교부(1981).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문교부(1988).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박창언(2003). 교육과정 편성권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21(1), 89~110.
 윤병희·조영태·신범석·곽상만·허경철(1991). 현행 교육과정 분석·평가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경환·류연수·박제윤·노희방(1999). 초·중·고등학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총론-, 서울: 교육부.
 함종규(2004). 한국 교육과정변천사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 논문접수일 : 2009년 12월 23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0년 01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02월 05일